

영상전공 대학생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연구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pyright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Video Product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copyright education is completed

주 저 자 : 양소정 (Yang, So Jung)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공 동 저 자 : 최혁재 (Choi, Hyuk Jae)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 신 저 자 : 양소정 (Yang, So Jung) 동아방송예술대학교
sj0401@dima.ac.kr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opyright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copyright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video production.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urvey shows that copyright consciousness among students with copyright educ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do not.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proven to b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knowledgeless and affective areas, and it has not been analyzed to affect the behavioral areas.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opyright consciousness among types of copyright education, as a result of difference verification including unlearned groups, it was analyzed that groups participating in programs such as regular subjects or special lectures showed a higher sense of copyright than unlearned groups. Despite the growing need for copyright education, it has been found that among 55 departments related to video production, it is quite low that copyright education is being offered as a regular subject. It is hoped that universities will become more interested in copyright education as many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education in fostering copyright consciousness.

Keyword

copyright, copyright education, copyright consciousness

요약

본 연구는 영상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수에 따른 저작권 의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 이수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이수 집단과 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행동적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작권 교육 유형 간에는 저작권 의식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이수 집단을 포함하여 차이검증을 진행한 결과 정규교과나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에서 비이수 집단보다 높은 저작권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관련 55개 학과 중 저작권 교육을 정규 교과로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를 통해 저작권 의식 함양에 저작권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저작권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 2-1. 저작권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 2-2. 대학의 저작권 교육 현황

2-3. 관련 선행 연구

3. 연구방법

- 3-1. 조사기간 및 대상
- 3-2. 조사도구
- 3-3. 분석방법 및 절차

4. 연구결과

-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 4-3. 분석 결과

1. 문제제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콘텐츠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이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영상, 사진, 음악 등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이러한 문제행위가 저작자의 재산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스마트 디바이스나 컴퓨터의 툴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특정 창작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프로덕션 작업을 하는 제작자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통해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불법복제, 변조를 방지하는 보안기술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기술발전 속도에 아직 사용자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제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 대상으로도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저작권 체험 교실' 등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교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대학의 저작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영상전공 학생들과 같이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전공분야에서조차 교육과정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저작권 침해는 주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일어난다. 폰트, 이미지(비트맵 이미지, 벡터 이미지), 비디오/오디오 클립 등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때 표현 영역과 법률 영역의 경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상전공 학생들은 영상 제작 시 기존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이 창작물이 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양면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창작활동에 비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이나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진 표현영역에 비례하는 교육의 병행이 고등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전공 대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견지 하에 저작권 교육이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검증하고, 대학에서의 저작권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김기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제27권, 제4호, pp.5-42.

2. 이론적 배경

2-1. 저작권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비율(94%)과 인터넷 침투율(96%)은 단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두고 퓨리서치는 한국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most heavily connected society)라고 분석한 바 있다.²⁾ IT 강국답게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터넷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빛나는 위상 뒤에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중독,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각종 그림자들로 얼룩져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인해 영화, 음악, 게임, 방송, 출판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2016년에만 4,229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탓에 창작물들의 불법 유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자의 재산권과 인격권도 보호하기 힘들어 숨은 피해자들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⁴⁾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는 저작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나 규제 등의 강화를 통한 물리적 처벌보다는 저작권 침해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나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작물에 대한 혹은 올바른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저작물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방법이라는 것이

다.⁵⁾ 이에 많은 후속 연구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의 근원적 방안으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해 오고 있다. 6)7)8)9)10)

허세롬·전석주(2014)는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 침해사례와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둘째,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용방법을 알아야 하며, 셋째, 저작권교육을 받았는지의 유무가 저작권 의식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이처럼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의 저작권 교육 인원은 [그림 1]에서와 같이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저작권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기반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4개 대학과 연계하여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²⁾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시간과 비

2) 임아영, “韓, 세계 최고 ‘연결사회’...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 1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241035001&code=920100#csidx7208448c4d0e05eade81b9b9236719f, 경향비즈, 2018.06.24.

3) 심홍연·임규건, 불법 디지털콘텐츠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8, 제25권, 제2호, p.24.

4) 송가영, 2차 사용권 피해 속출...저작권법은 ‘제자리’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1545§ion=section26, 문화저널21, 2018.1.15.

5) Cheng, H. K., Sims, R. R., &Teegen, H. To purchase or to pirate software: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97, 13(4), pp.49-60.

6) 강경순·이철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저작권 소양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009, 제15권, 제2호, pp.181-202.

7) 홍지연·전우천, 선행조직자로서의 저작권 의식 측정 척도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14, 제14권, 제2호, pp.241-250.

8) 손유경·손희현, 전문계 고등학생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에서 사고력 신장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10, 제13호, 제6호, pp.4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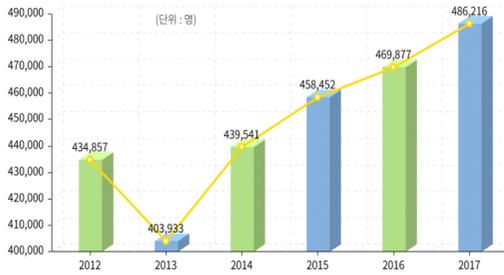
9) 강성희,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서·행동 영역별 비교: 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3, 제16권, 제1호, pp.43-50.

10) 박주연·정승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3, 제16권, 제5호, pp.1-8.

11) 강경순·이철현, 위와 동일.

12)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1164, 2018.

용을 저작권 교육에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현장에 비해 대학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림 1] 저작권 교육 인원 추이¹³⁾

대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혹은 개인 활동을 통해 가장 활발히 저작물을 생산해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생산해내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저작권 교육은 필수라 하겠다.

2-2. 대학의 저작권 교육 현황

본 연구에서는 영상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실제 고등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개설·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영상’ 관련 학과로 검색되는 총 221개 학과의 정보를 검색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과(공연, 애니메이션, 의료, 정보처리, 공학, 언론 등 총 103개 학과)나 이론 중심교육의 대학원 전공(60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사이버대학(3개) 등을 제외한 뒤 방송, 영화, 광고 제작 등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나 전공에 한정하여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과,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전공 등 총 55개 학과가 도출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과의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저작권 관련 교과목 정보를 수집하고 교과목 설계 및 운영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 전국 대학교 영상전공 대학 저작권 교육 현황

	저작권 교과목 개설학교	저작권 교과목 비개설학교
4년제 대학	홍익대학교, 경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석대대학교, 한남대학교, 건국대학교	배재대학교, 영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대학교, 동서대학교, 협성대학교, 극동대학교, 우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청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건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 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경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강동대학교, 여주대학교, 인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송인여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영상 관련 55개 학과에 대한 저작권 교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 혹은 해당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은 총 9개로 전체의 약 16%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4년제 대학은 홍익대학교, 경성대학교, 한세대학교, 국민대학교, 우석대학교, 한남대학교, 건국대학교 7곳이었으며, 전문대학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2곳에서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개설한 저작권 관련 수업의 교과목명은 예술과 법, 정보사회와 저작권, 영상저작권실무, 콘텐츠 라이선싱, 미디어 비평, 지식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권 법개론, 미디어 법과 윤리, 예술창작과 저작권,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영상저작권실무, 예술·창작과 저작권법과 같이 15주차 교육 내용이 영상이나 미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양한 미디어 윤리 가운데 하나로서 혹은 예술창작 활동 시 법 적용 측면에서 등 광범위한 교육 내용 중 일부로 저작권 교육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statistics/education/index.do>.

[표 2] 저작권 관련 수업 개설 학과(학부) 및 교육내용 현황

대학명	개설학과(학부)	교과목명	학년	시수	교육내용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창작기초학부	예술과법	2	2	예술가들의 창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이해하여 이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 보호와 초상권, 표절, 상표권 등의 예술관련 분야별 침해 사례를 연구하고 예술과 연계된 법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정보사회와 저작권	전학년	3	문학, 예술적 창작물에 기용인 저작자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은 이제 단순히 소설과 음악 등의 보호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음악, 미술저작물, 사진, 영화, 건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 법리와 응용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MP3 파일, 컴퓨터 글꼴, 케이블 TV, 위성·디지털 저작물 유통 등의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점점 변화, 발전하는 저작권의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예술융합학부	영상저작권실무	2	3	본 강의는 콘텐츠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 핵심내용에 대해 법학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실무중심의 강좌로 구성된다.
	방송보도제작과	콘텐츠라이센싱	1	3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영상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우수한 콘텐츠의 가치를 알고 보호해야할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	미디어비평	4	3	각종 신문/방송/통신사업별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 등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법, 제도 환경과 정책변화를 이해하고 미디어기획, 비즈니스 기획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역량을 배양한다.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지식재산권의 이해	전학년	2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문화콘텐츠와 한류, 디자인과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은 국부창출의 원천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방법과 주요이슈에 대해서 살펴본다.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지는 정신적 산물을 지적재산을 규율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기초원리를 이해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창출, 활용방법을 습득한다.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지적재산권법개론	전학년	3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겸비한 지적재산권 전문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미디어법과윤리	3	3	정보화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등을 통한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윤리 및 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인격권을 동시에 보호권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 조정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미디어 윤리 법제다. 이에 언론의 자유, 선거와 보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언론과 공정한 재판, 저작권, 광고 등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다.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예술창작과 저작권	전학년	3	예술과 창작에 있어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이해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저작자로서 가지는 권리의 내용과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창작자의 권리 구현에 관련한 제도를 이해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저작자로서의 권리와 공정한 이용에 관한 한계 설정 능력을 배양한다. 저작권에 관한 균형 있는 보호 체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2	2	본 과목은 모바일 시대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저작권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스마트폰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학습한다. 저작권과 영화, 음악, 소설 등의 문화 예술과의 관계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학습한다.

2-3. 관련 선행 연구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교육에 대한 연구들 또한 점차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대학에서의 저작권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의식 관련

연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김태희·강문설, 2015,¹⁴⁾ 심유조·여정성, 2014,¹⁵⁾ 김경희·김태웅,

14) 김태희·강문설, 스마트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5, 제9권, 제9호, pp.2180-2188.

15) 심유조·여정성, 대학생 소비자의 디지털 저작권

2013¹⁶⁾와 저작권 보호 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김기태, 2014)¹⁷⁾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기태(2014)의 연구에서는 저작권 보호 자체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평소 자신이 행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정도가 과하다는 반응을 보여 다소 모순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한 연구(강성희, 2013)¹⁸⁾에서는 저작권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이나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주연·정승민, 2013)¹⁹⁾ 결과도 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두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 저작권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이한 결과 역시 진단도구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특정 전공과 관련한 저작권교육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만화애니메이션 저작권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연구(박경철, 2008)²⁰⁾와 대학생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를 다룬 연구(황성근, 2008)²¹⁾ 정도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상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수 여부가 이들의 저작권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연

침해행동에 관한 연구: 태도와 관계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4, 제10권, 제3호, pp.1-32.

16) 김경화·김태웅, 컴퓨터활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3, 제16권, 제1호, pp.63-71.

17) 김기태, 위와 동일.

18) 강성희, 위와 동일.

19) 박주연, 정승민, 위와 동일.

20) 박경철, 만화애니메이션 저작권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8, 제13권, pp.1-12.

21) 황성근,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 표현, 2008, 제1권, 제1호, pp.231-265.

구자들마다 상이함에 따라 측정도구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에서 개발된 저작권 의식 진단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상전공 대학생은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의식 중 인지적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의식 중 정의적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의식 중 행동적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작권 교육 이수 집단 내 교육과정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3-1. 조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영상전공 대학생의 저작권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D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이후 응답에 오류가 있는 응답지를 제거한 뒤 총 232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저작권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윤진 외(2006)가 청소년 저작권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 10문항, 정의적 영역 6문항, 행동적 영역 9문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인지적 영역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생각과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정의적 영역은 저작권 보호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질문으로, 행동적 영역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및 저작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경향이나 행위, 의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그러나 항목간의 유사도가 높거나 구분이 모호한 항목이 있다

22) 최윤진·김혁진·구정화·정순원, 청소년 저작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척도는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부정형 문항은 추후 역코딩하였다. 이 외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과 이수한 저작권 교육과정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3-3. 분석방법 및 절차

분석은 SPSS/M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사전연구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후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저작권 의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ANOVA 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232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65명(28%), 여학생은 167명(72%)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이 75명(32.3%), 2학년이 87명(38%), 3학년 70(30.2%)이고, 전공은 영상제작과 72명(31%), 디지털영상디자인과 64명(27.6%), 방송보도제작과 54명(23.3%), 방송기술계열 42명(18.1%)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 여부는 '있다'는 응답이 85명(36.6%), '없다'는 응답이 147명(63.4%)으로 조사되었다. 이수 교육과정 유형의 경우 '정규교과목'을 들었다는 응답은 38명(44.7%), '일반 교과목에서의 부분적 수업'은 28명(32.9%),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은 19명(22.4%)로 분석되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잠재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²³⁾.

[표 3] 저작권 의식 요인분석

	문항	성분		
		1	2	3
인지적 영역	저작권 종류	.771		
	저작권 보호 이유	.758		
	저작권 보호 시 저작권자 이익	.732		
	본인 창작물 저작권 보호방법	.730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행동	.725		
	저작권 개념	.725		
	저작권 보호 시 사회발전 도움	.570		
정의적 영역	저작권 침해 시 처벌사항	.517		
	저작권 침해 자료 여부		.776	
	콘텐츠 다운로드 시 침해 여부		.757	
	저작권 침해 행동 자기검열		.676	
	게임 및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		.630	
저작권 보호 통한 유저 편의성		.580		
행동적 영역	창작물 무단 전제 및 재배포			.768
	공유사이트 불법 이용			.768
	콘텐츠 불법 캡처 공유			.707
	소프트웨어 크랙버전 설치			.700
Kaiser-Meyer-Olkin 척도			.803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치 ²	590.923		
	자유도	136		
	p	<.001		

그 결과 행동 영역 중 '타인의 창작물 과제 활용'과 '무료소프트웨어 허용범위 인지 후 사용', '콘텐츠복제 거절' 3개 항목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로 나타나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7개의 문항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동에 대한 자기검열'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 행동적 영역의 구성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적재치 값이 .676으로 가장 높은 적재치를 보여 해당 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17개의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된 총 분산은 56.514%이었다.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누적 설명력을 보이면 요인의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²⁴⁾

23) 요인적재량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 0.3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기준으로 ± 0.4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1, p.82.)

24) 사회 과학에서는 자료가 될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

하지만, 그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성분이 뚜렷하게 분리되면 모형을 수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인지적 영역(32.97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동적 영역(13.851%), 정의적 영역(9.685%)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각 영역으로 구성된 감정적 진단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인지적 영역'의 8개 항목의 Cronbach α 값은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의적 영역' 5개 항목은 .777,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 4개 항목의 경우 .728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815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4-3. 분석결과

본 연구는 영상전공 대학생들의 저작권 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저작권 의식의 세 가지 영역인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수준에 저작권 교육 이수 여부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 교육 이수/비이수 집단 간 저작권 의식 차이

구분	이수자 (n=85)		비이수자 (n=147)		t
	M	SD	M	SD	
인지적	30.26	5.41	26.55	4.61	5.301***
정의적	19.11	3.49	17.77	3.37	2.875**
행동적	14.05	3.61	13.53	2.88	1.128
저작권 의식	63.41	9.20	57.88	7.83	4.848***

*** $p < .001$, ** $p < .01$

검정 결과,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저작권 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848$, $p < .001$). 즉, 저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의식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영상전공 대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저작권 의식 평균은 30.26로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MD=26.55)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5.301$,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영역 저작권 의식에서도 저작권 교육 이수 학생들(MD=19.11)이 비이수 학생들(MD=17.7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301$, $p < .001$). 다만, 행동적 영역은 이수자와 비이수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적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강성희(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교육 이수 집단 내 교육과정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집단은 저작권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뤄지는 '정규교육과정' 집단과 영상제작과 관련된 "일반 교과목에서 부분적 수업" 집단 그리고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 집단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체 표본수가 85명이고 각 집단의 표본수가 30보다 작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Kolmogorove-Smirnov Test를 이용해 각 집단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성이 가정되었기에 모수통계방법인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수 유무와는 달리 수업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은 세 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어떤 수업 유형의 수업이 비이수에 비해 효과적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비이수자 집단과 이수자 세 개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저작권 의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177$, $df=3$, $p < .0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정규교육과정' 집단과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 집단에서 '비이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에 비해 정규교육과정이나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교과목에서 부분적 수업'으로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산의 약 60%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의 기준이다(원태연·정성원, 통계조사분석, 한나레이카데미, 2013, p. 427.)

[표 5] 정규/부분/특강/비이수 집단 간 저작권 의식 차이

집단(N)	M(SD)	F	차이집단
정규(38)	64.5(8.4)	9.177 ***	정규와 비이수 집단*** /특강과 비이수 집단**
부분(28)	60.9(8.7)		
특강(19)	64.8(11)		
비이수(146)	57.9(8.7)		

*** $p < .001$, ** $p < .01$

5. 결론 및 제언

최근 저작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교육에 대한 연구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저작권 교육 그 중에서도 영상전공 대학생들의 저작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상전공 관련 전국의 55개 학과에 대한 저작권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작권 교육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잡은 영상전공과 같이, 반드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학과나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조차 약 16%만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공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과가 겨우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저작권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2014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국내 대학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²⁵⁾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 또한 저작권 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3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학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용 혹은 전문 분야별 저작권 교육 가이드와 교수학습지도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해당 전공 교수가 학습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통해 교수자들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 교육을 받은 영상전공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저작권 의식 중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작권 교육의 효과가 두 영역에서 입증된 것이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기존 연구²⁶⁾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행동적 영역에는 저작권 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는 행동적 영역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작권 교육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의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표본수가 많지 않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의식 차이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비이수 집단과 각 교육 유형별 이수 집단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정규교육과정’이나 ‘특강’을 이수한 집단에서 비이수 집단과의 저작권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제3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비해 저작권 정규교과나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저작권 의식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규교과나 특강은 일반 제3수업에 비해 저작권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비이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굳이 정규 교과목이 아닐지라도 대학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특강 형식의 저작권 교육이라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저작권 교육의 효과성 연구들은 그 수준이나 범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디지털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비 사회인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25) 김기태, 위와 동일.

26) 강성희, 위와 동일.

개설·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영상 제작과 같이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전공자들에게는 행해서는 안 되는 법적 경계선을 인식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으로써 수동적 수요자 입장에서 저작권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창작자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저작권의 적극적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창작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질 때 학생들의 창작역량과 작품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원태연·정성원, 통계조사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13.
2. 송지준, SPSS/AMOS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1.
3. 심유조·여정성, 대학생 소비자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행동에 관한 연구: 태도와 관계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14, 제10권, 제3호.
4. 황성근,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 표현, 2008, 제1권, 제1호.
5. 강성희,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 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3, 제16권, 제1호.
6. 박경철, 만화애니메이션 저작권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8, 제13권.
7. 홍지연·전우천, 선행조직자로서의 저작권 의식 측정 척도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14, 제14권, 제2호.
8. 김태희·강문설, 스마트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5, 제9권, 제9호.
9. 박주연·정승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3, 제16권, 제5호.
10. 강경순·이철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저작권 소양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009, 제15권, 제2호.
11. 손유경·손희현, 전문계 고등학생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에서 사고력 신장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10, 제13권, 제6호.
12. 심홍연·임규건, 불법 디지털콘텐츠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8, 제25권, 제2호.
13. 김경희·김태웅, 컴퓨터활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13, 제16권, 제1호.
14. Cheng, H. K., Sims, R. R., &Teegen, H. To purchase or to pirate software: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97, 13(4).
15. 김기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제27권, 제4호.
16. 최윤진·김혁진·구정화·정순원, 청소년 저작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17. <http://biz.khan.co.kr>
18. <https://www.copyright.or.kr>
19. <https://www.mcst.go.kr>
20. <http://www.mhj21.com>